

(표지 삽입 예정)



## 제 출 문

목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목포시 관광과와 2023년 6월에 체결한 『목포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에 대한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이 경 회

---

수행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연구진

책임연구 배용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박명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하 춘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 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김남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본 연구보고서는 목포시 관광과의 의뢰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목포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목포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차

##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1.1 연구의 배경 .....	12
1.2 연구의 목적 .....	12
2. 연구의 방법 .....	13
2.1 연구의 대상 .....	13
2.2 시·공간적 범위 .....	13
2.3 내용적 범위 .....	13
2.4 연구의 방법 .....	15

## 제 II 장 이론적 고찰 및 목포시 관광환경 분석

1. 무장애관광 환경 연구 고찰 .....	18
1.1 관광약자의 개념 .....	18
1.2 무장애의 개념 .....	23
1.3 무장애 관광 고찰 .....	28
2.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사례 고찰 .....	30
2.1 국내 법률 및 사례 고찰 .....	30
2.2 국외 법률 및 사례 고찰 .....	37
3.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분석 .....	42
3.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과정 .....	42
3.2 목포시 무장애 관광 환경 분석 .....	42

## 제 III 장 목포시 주요 관광지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1. 실태조사표 개발 .....	46
1.1 개발 과정 .....	10
1.2 실태조사 항목 .....	33
2.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59
3.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10
3.1 근대역사문화관 1 .....	10

3.2 실태조사 항목 .....	33
제 IV 장 심층 그룹 인터뷰(FGI)	
1. 심층 그룹 인터뷰 개요 .....	10
2. 심층 그룹 인터뷰 분석 .....	59
3. 소결 .....	59
제 V 장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1. 종합계획 개요 .....	10
2. 세부추진계획 .....	59
3. 목포시 역사문화시설 개선(안) .....	59
4. 정책 제안 .....	59
부록 .....	10
참고문헌 .....	10

표  
목차

III 표 1-1 연구 수행 체계 ..... 7

# 그림 목차

III 그림 II-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66
---	----



# I

##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 제 I 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및 사회약자들에 대한 문화관광 활동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인권을 가진 개체로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고 있음
-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정책의 방향 설정은 필수적이며, 관광 또한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주요 정책 중 하나임
- 국내에서는 관련하여 뒷받침 되는 법적 근거도 갖추어지고 있으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목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이미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도시·열린관광지’ 조성, 전라남도 ‘관광약자 환경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1.2 연구의 목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환경) 디자인을 넘어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적용을 기본으로 한 관광 환경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른 실버관광 등 관광약자의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한 신규 관광시장의 준비로서 관광접근성 강화 등을 인한 환경 개선 등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의 초석 마련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의 대상

- 본 과업의 관광약자는 「목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sup>1)</sup>과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함 1
- 관광환경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대상으로는 목포시가 관광지를 구분하고 있는 유달산권, 갯바위권, 삼학도권, 고하도권, 북항권의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함

### 2.2 시·공간적 범위

- 현재 2023년의 목포시 일원 주요 관광지를 5개의 권역(유달산권역, 삼학도권역, 갯바위 권역, 고하도권역, 북항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조사와 함께 42개의 관광지 환경을 조사함
- 2024년 ~ 2028년의 기간 동안 현재의 관광환경을 단기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관광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가이드를 제시함

### 2.3 내용적 범위

-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 관광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 국·내외 무장애 관광 우수사례 및 타 지자체의 사업 등과 무장애 관광 환경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목포시의 관광지 실태조사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목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5개 권역별 주요 관광지 42곳 선정

■ 그림 1-1 [권역별 조사 대상지]

유달산권	삼학도권	갯바위권	고하도권	북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역사관 1, 2</li> <li>• 성옥 기념관</li> <li>•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li> <li>• 시민의 중</li> <li>• 대중음악의 전당</li> <li>• 동본원사</li> <li>• 목포진역사공원</li> <li>• 가톨릭목포성지</li> <li>• 유달산둘레길</li> <li>• 조각공원</li> <li>• 목재문화체험장</li> <li>• 어민동산</li> <li>• 유달유원지</li> <li>• 스카이워크</li> <li>• 목포미식문화 갤러리</li> <li>• 서산동시화마을&amp;드라마 촬영지</li> <li>• 1987영화촬영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삼학도유람선</li> <li>• 어린이바다박물관</li> <li>• 요트마리나</li> <li>• 삼학도 공원</li> <li>•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li> <li>• 삼학도&amp;이난영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광장</li> <li>• 춤추는바다분수</li> <li>• 갯바위</li> <li>• 목포문학관</li> <li>• 남농기념관</li> <li>• 목포자연사박물관</li> <li>•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li> <li>• 문화예술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해상케이블카</li> <li>• 고하도 용오름길</li> <li>• 고하도 전망대&amp;고하도 해상데크</li> <li>• 목화문화관 &amp; 하도목화체험장</li> <li>• 이충무공 유적지</li> <li>• 국립호남권생물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항 노을공원</li> <li>• 노을 전망대</li> <li>• 북항해양수산 복합센터</li> </ul>
18개소	6개소	8개소	6개소	3개소

• 관광환경 시설 측면의 개선방안 제시

-장애 유형별·임산부 등 관광약자 특성,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한 관광환경 개선 모델 제시

-역사, 자연생태자원 등 유형별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관광환경 서비스 측면의 개선 방안 제시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한 장애유형·대상별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실태조사 대상지 개선 방안 제시

-관광약자에게 관광정보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및 콘텐츠 계획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종사자의 인식개선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계획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계획 수립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및 재정투자 계획 수립

-사업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2.4 연구의 방법

### 2.4.1 선행 연구 분석

- 문헌자료 분석을 통한 국내·외 무장애관광 정책 분석
  - 국내·외 법률 검토
  - 국내·외 제도 및 사례 조사
-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분석
  - 무장애관광 추진 과정
  -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현황

### 2.4.2 실태조사

- 목포시 주요 관광지 42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조사
  - 목포시 주요 관광지의 관광환경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조사표 개발
  -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목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5개 권역별 관광지 42곳 선정
  - 실태조사 실시 : 관광약자의 눈높이 맞춤형 현장조사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분석

### 2.4.3 집단 초점 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 진행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 요식업 및 숙박업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목포시의 무장애 관광 조성을 위한 집단 초점 인터뷰 진행

■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 II

## 이론적 고찰 및 목포시 관광환경 분석

---

1. 무장애관광 환경 연구 고찰
2.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사례 고찰
3.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분석

# 제II장 이론적 고찰 및 목포시 관광환경 분석

## 1. 무장애관광 환경 연구 고찰

### 1.1 관광약자의 개념

- 목포시는 관광약자에 대해 「목포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1.1.1 관련법규 정의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p><b>■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b></p> <p>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5. 11. 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li><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li><li>-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li><li>-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li><li>-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li></ul></li><li>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li><li>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ol>

- 위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b>「국민기초생활 보장법」</b>
<p>■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p> <p>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p> <p>■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p>
<b>「장애인복지법」</b>
<p>■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p> <p>&lt;장애인복지법 시행령&gt; /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p> <p>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填)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p> <p>■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p> <p>&lt;장애인복지법 시행령&gt; /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p> <p>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lt;개정 2019. 12. 3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li> <li>-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li> <li>-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li> </ul>
<b>「장애인연금법」</b>
<p>■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p> <p>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填)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p> <p>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p>
<b>「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b>
<p>■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p>
<b>「한부모가족지원법」</b>
<p>■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p> <p>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p>

### 1.1.2 지방자치단체 조례

- 44개의 조례가 관광약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덧붙이고 있음
- 대부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관광진흥법」의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을 관광약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 이동약자도 포함하고 있어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법률 내용 / 자치구 및 법규명	
1	<p>“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무장애 관광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li> </ul>
2	<p>“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무장애 관광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li> <li>•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2조(정의)</li> <li>•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동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3	<p>“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li>•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4	<p>“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5	<p>“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b>영유아</b> 등 관광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6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b>저소득층</b>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7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b>신체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사회적</b> 제약으로 인하여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완주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8	1.“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9	1.“관광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 <b>조건</b> 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0	1.“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b>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b> , 정보 및 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b>장애인</b> ,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2조(정의)
13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b>고령자</b> ,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4	2.“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b>장애, 노령</b>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 제2조(정의)
15	2.“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장애, 노령, <b>영유아 동반</b> ,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16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 <b>장애인복지법</b>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7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b>노인, 임산부</b>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18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19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b>임신 등으로</b>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20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및 고령, 임신, <b>영유아 동반</b>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21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b>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b>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22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b>영유아 동반</b> ,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23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 제2조(정의)
24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25	“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노인</li> <li>-3. 임산부</li> <li>-4. 영유아 동반인</li> <li>-5. 외국인</li> <li>-6. 그 밖에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3조(정의)</li> </ul>
26	<p>“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li> <li>-2. 노인</li> <li>-3. 임산부</li> <li>-4. 영유아 동반인</li> <li>-5. 외국인</li> <li>-6. 기타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3조(정의)</li> </ul>
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li> <li>-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li> <li>-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li> <li>-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li> </ul> </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li> <li>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li> <li>5.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li> </ul>

## 1.2 ‘무장애’의 개념

### 1.2.1. 국·내외 가이드 문헌

- 장애인 등을 위한 디자인은 초기에는 장애인의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접근을 보장하는 측면의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어린이, 양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포함하고, 모든 이들이 전 생애 과정을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복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발전하였음. 이러한 개념은 이후 1970년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교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발전함.

-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나이·장애·국적 등으로 인한 경계와 장벽이 없는 디자인을 추구함
-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문헌에서도 ‘무장애, 장애물 없는 디자인(Barrier free Design)’보다는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 접근과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ISO 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 ISO<sup>2)</sup>

-접근성: 연령, (신체의)크기, 능력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에 접근하고,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건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 UN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sup>3)</sup>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정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능한 모든 사람이 변경이나 특수 설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장애

2) ISO, 2021, ISO 21542-International Standard : Building construction-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2<sup>nd</sup> Editon, p.2

(원문) accessibility : provision of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for people, regardless of their age, size, ability or disability, to be able to gain access to them, into them, to use them and exit from them

3) UN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2-definitions.html> Article 2 - Definitions

(원문) Universal design: "Universal design" means the design of products, environments, programmes and services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out the need for adaptation or specialized design. "Universal design" shall not exclude assistive devices for particular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re this is needed.

인 그룹을 위한 보조 기구를 배제하지는 않음

#### ■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 Approved document M<sup>4)</sup> / 영국

- 접근: 접근, 입장 또는 퇴장
- 접근 가능: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와 관련하여 장애, 연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sup>5)</sup> / 일본

- 접근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 인프라, 시설, 장비, 제품 및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 2018 POCOG 접근성 매뉴얼<sup>6)</sup> / 한국

-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연령이나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특정 사용자층을 위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과는 구별됨
- 배리어 프리 디자인 :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장애물(barrier)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디자인을 의미
- 접근 가능한 환경(Accessible environment): 지적·신체적·감각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 환경

---

4) Government of United Kingdom, 2021,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Approved Document M, vol.2(2015 edition), p.14

(원문) ·access : approach, entry or exit

·accessible : with respect to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means that people, regardless of disability, age or gender, are able to gain access.

5) The Tokyo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2017,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lines, p.i-9.

(원문) Accessibility : Ensuring that people from a broad range of ages can have smooth access to and use the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quipment, products, and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disabilities.

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5, POCOG 접근성 매뉴얼, p.23.

## ■ ADA / 미국<sup>7)</sup>

- 미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발전을 살펴보면 그 개념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동등한 기회와 건축적인 장애물 제거, 접근성의 확대를 통해 점차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미국 장애인법(ADA :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광범위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및 개조, 변경 및 조정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ADA의 조항은 접근성 가이드라인으로 발전하였음

-이연숙은 디자인 개념의 변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디자인 개념의 변화	
장애물 없는 디자인 (barrier-free design)	장애인과 노인들 특히 휠체어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 기존 환경에 오랫동안 계속되어오던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그 장애물의 제거에서 출발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사용자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이용가능성과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접근가능한 환경 마련
수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사용자 요구의 다양함과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 접근 가능한 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가지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없앨 수 있는 디자인
생애주기 디자인 (lifespan design)	사용자의 능력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처음부터 어느정도 수용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개념

### 1.2.2. 국내 지방자치단체 조례

-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있는 4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1곳에서 ‘무장애관광’과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의 정의하고 있음
- 9개의 조례에서 ‘무장애관광’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7) 이연숙 외 (2006) 미국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주택의 환경행태학적 분석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6(4): 41-50 재인용 / \*출처: 우진희.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에 따른 공공시설 사인시스템 평가 연구: 서울시 구청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4개의 조례에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를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더불어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과 에 ‘접근 가능한 관광사업’대해서 정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음
- 4개의 조례에서는 ‘복지관광’에 대해 추가 정의하고 있음

법률 내용 / 자치구 및 법규명	
1	1.“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2	3.“무장애관광”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3	1.“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4	3.“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5	1.“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6	3.“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3조(정의)
7	2.“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접근가능한 관광상품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li> </ul>
8	<p>2.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p> <p>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p> <p>5.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9	<p>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p> <p>3.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의 조성</p> <p>과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p> <p>4.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10	<p>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들이 제약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보급·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p> <p>4.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광기본권의 보장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복지의 실현을 말한다.</p> <p>5.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p> <p>6.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이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2조(정의)</li> </ul>

### 1.3. 무장애 관광 고찰

-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무장애관광’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무장애 관광 조례	관광약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li> <li>•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li> <li>•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이동편의증진 방안</li> <li>•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li> <li>•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 방안</li> <li>• 접근 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 보급, 육성 방안</li> <li>•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애 관광 정책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li> <li>•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li> <li>• 무장애 관광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li> <li>•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li> <li>•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li> <li>• 무장애 관광전문 인력 양성</li> <li>•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li> <li>•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li> </ul>	<p>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li> <li>-모니터링 및 평가</li> <li>-홍보활동</li> <li>• 관광약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li> <li>•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li> <li>• 접근 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li> </ul>
---	--

- 우리나라에서는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유니버설 관광(universal tourism)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음<sup>8)</sup>

-첫째, 장애인 관광(disabled/disability tourism), 영·유아 동반 및 어린이 관광(infant tourism), 실버 관광(silver tourism)과 같이 관광객 유형으로 구분하는 개념

-둘째, 복지관광(welfare tourism), 무장애 관광(barrier free tourism),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과 같이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둔 개념

- 앞서 ‘무장애’ 개념을 살펴본 것처럼 세세하게 구분하는 내용의 문헌들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사업 등에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무장애 관광’은 모든 사람이 ‘신체적·정신적·환경적인 장애’에 따른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무장애 관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광약자인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 외국인 등도 이동과 접근에 불편이 없으며, 어떠한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조성된 무장애 관광도시가 바탕이 되어야 함

- 현재 무장애관광 개념은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과 관광에서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 발전하고 있음

8) 권신형, 김진희, 2023, “무장애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예술융합연구 4(3), p.89

## 2.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사례 고찰

### 2.1 국내 법률 및 사례 고찰

#### 2.1.1. 국내 법률

##### ■ 관광진흥법

- 1975년에 제정되어 1976년부터 시행한 「관광사업법」과 1975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통합하고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 및 관광여건의 조성 및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함. 「관광진흥법」은 1986년 전부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 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의 관광취약계층 및 관광약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관광진흥법
<b>■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등)</b> · : 유원시설경영자는 장애인·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유원시설 설치·노력해야 함
<b>■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b>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개정2023. 3. 21.>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개정2023. 3. 21.>
<b>■ 제47조의4(관광취약 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b>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b>■ 제48조의5(관광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b>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7년에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이 의무화되었음

<b>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b>
<p><b>■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금지(제4조의차별행위)(제1항)</li> <li>· :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시행령제15조의2)(제2항)</li> <li>· :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제3항)</li> </ul> <p><b>■ 제4조(차별행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배제·제한·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직접차별)(제1항)</li> <li>· :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간접차별)(제2항)</li> <li>·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정당한편의제공거부)(제3항)</li> </ul>
<b>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b>
<p><b>■ 제15조의2(관광활동의차별금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별표4의2에 신설(제1항)</li> <li>·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제2항제1호)</li> <li>·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제2항제2호)</li> </ul> <p><b>■ 별표4의2(관광사업자의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2025.3.20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실업, 종합 유원시설업 등</li> </ul> </li> <li>- 2030.3.20 적용</li> <li>·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위 관광사업자외의 관광사업자</li> </ul>

## 2.1.2. 지자체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

### ■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계획」 (2018~2022)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 사회적 인식 및 관광서비스 개선
- 무장애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 그림 II-1 [무장애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sup>9)</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 이른바 '관광약자'들을 응대하는 법을 안내하는 '무장애 관광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li> <li>• 내용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관광객에게 안내할 때는 "이쪽저쪽"이라는 표현보다는 "왼쪽으로 몇 걸음, 몇 미터"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li> <li>-관광객의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휠체어 이용 관광객이 식음시설 이용 시 음식진열대와 가깝거나 진출입이 쉬운 위치로 안내한다.</li> </ul> </li> </ul>
--	---

#### ■ 표 II-1 [성과지표]

지표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장애 관광편의시설 확충 (개소)	50	50	50	50	50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운영(대)	1	-	1	-	1
무장애 관광콘텐츠 확대(개)	40	40	40	40	40
관광약자 여행활동지원(명)	1,000	1,500	2,000	3,000	4,000
무장애 관광홈페이지 구축·운영(방문자수)	구축	1,000	1,500	2,000	2,500

### ■ 경기도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계획」 (2018~2023)

- 관광환경 개선 및 이동권 강화
  - 무장애 실태조사 및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 무장애 투어버스 운영 및 차량지원 플랫폼 구축
  - 무장애인증 관광업계 지원

9) 연합뉴스, 21018.11.06, "관광관광약자 응대는 이렇게"...서울시 無장애 관광서비스 매뉴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450140>

- 정보 접근체계 구축
  -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및 픽토그램 안내표지판 등 제작
  - 주요 관광지 촉지안내도 및 디지털안내 시스템 구축
  - 외국인·장애인등을 위한 QR코드 및 음성안내 체계구축
- 관광콘텐츠개발
  - 실버투어, 가족여행등테마별·대상별무장애관광코스개발
  - 관광 취약 계층 관광 활동 지원(시범투어등)
  - 수어가능 해설사 육성
- 인식개선
  -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 및 인식개선 교육
  -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및 홍보

■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2019~2023)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관광지 유형별 가이드라인
  - 관광지 공간별 가이드라인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서비스 가이드라인
  - 관광약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관광활동 지원 방안
  -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
  - 전문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세부추진계획
  - 모델하우스형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 조성
  - 관광지 유형별 장애물없는 관광지 시범 조성

-23개 시군 장애물없는 관광 순차적 조성

■ 순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2021~2025)

- 목표 :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행체험 1번지 순천
- 정책 과제
  - 물리적 환경 개선
  - 정보 접근성 강화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관련 인력육성 및 종사자 교육등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도모
- 세부추진 계획
  - 각 관광지별 개선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 활용한 개선

■ 제주특별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계획」(2017~2022)

- 점점별 무장애 환경조성
  - 공영관광지 및 유료관광지 우선 정비 추진('21년까지33개소대상)
  - 사설 관광지 정비 권고(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정비 등)
  - 음식점 접근성 확보 권고(화장실 우선 정비)
  - 숙박업소 접근성 확보 권고
  - 전세버스 연차별 지원 추진('17년2대에서'21년까지4대추가)
  - 렌터카의 리프트 승합차 우선 지원('21년까지14대추가)
  - 휠체어 무료 대여(공항과 항만에서 임대 및 반납 시스템 도입)
-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시범투어등)
  - 수어가능 해설사 육성

-실버투어, 가족여행등테마별<sup>o</sup>대상별무장애관광코스개발

- 인식개선

-관광업계 종사자 서비스 및 인식 개선 교육

### 2.1.3.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국내사례

#### ■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매년 ‘열린관광지공모사업’을 통해 열린관광지(무장애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 열린관광지 홈페이지 (<https://access.visitkorea.or.kr/main/intro02.do>) 운영 하고 있으며, 각 관광지에 대한 기본 정보와 더불어 테마별 여행정보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 제공
- 2015년 6개소, 2016년 5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12개소, 2019년 20개소, 2020년 23개소, 2021년 20개소를 선정·조성했고, 2022년에는 20개소, 2023년에는 시흥 (오이도 해양단지, 선사유적공원) 등 20개 관광지 선정함

#### ■ 그림 II-2 [열린관광지 조성 사례]



####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 서울관광재단

- 주요 서비스

-무장애 관광 상담 및 정보 제공

-휠체어 리프트 장착 다누림 버스·미니밴 운행

-수전동 휠체어 , 해변용 휠체어 , 이동식 경사로 등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화면 확대기, 트랙볼 마우스 등이 갖춰진 정보검색대 운영

-관광약자를 위한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 III 그림 II-3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이동서비스]

관광약자 이동서비스 제공	
<p>서울다누림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li> <li>• 차량 대여: 관광약자 소속 기관의 단체관광 목적으로 예약제 운영</li> <li>• 차량 규격: 휠체어 8석 / 일반 21석 (총 29석) ※필요 시 미니밴 2대까지 단독/추가 대여 가능</li> <li>• 이용 인원: 최소 15인~최대 29인</li> <li>• 이용 방법: 다누림홈페이지( <a href="http://www.seouldanurim.net">www.seouldanurim.net</a> ) 기관 및 단체명의 회원가입 후 메뉴 이용</li> </ul>
<p>서울다누림 미니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약자 소그룹 및 개별여행 지원을 위한 서비스</li> <li>• 다누림 투어 추천여행: 무장애 관광코스를 매월 추천코스로 선별해 예약제로 운영</li> <li>• 다누림 투어 자유여행: 소규모 자유여행을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 예약제로 운영</li> <li>• 차량 규격: 휠체어 2/ 일반 7 (총 9석)</li> <li>• 이용 방법: 다누림홈페이지( <a href="http://www.seouldanurim.net">www.seouldanurim.net</a> ) 개인 회원가입 후 '다누림 투어 예약' 메뉴 이용</li> </ul>
<p>여행용 보조기기 대여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전동휠체어, 해변용 휠체어, 이동식 경사로, 유아차 등 여행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li> <li>• 서울 지역 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수령 · 반납할 수 있는 방문 서비스 (차량 배송)</li> <li>• 이용 기간: 1회 최대 15일까지 무료 이용(보증금 있음)</li> <li>• 이용 대상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기관 및 단체: 서울 및 국내외</li> <li>-서울 외 지역 거주자 또는 기관 및 단체: 서울</li> </ul> </li> <li>• 이용 방법: 다누림홈페이지( <a href="http://www.seouldanurim.net">www.seouldanurim.net</a> ) 개인/기관 및 단체명의 회원가입 후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 메뉴 이용</li> </ul>

## 3.2 국외 법률 및 사례 고찰

### 3.2.1. 국외 법률

#### ■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제정
- 한국 2009년 비준(국내법과동일한효력발생)
- 2014년, 2022년제1차 및 제2차·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및체육활동에대한참여)에서 관광 서비스 보장을 규정.
-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국가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 장애인이 관광지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UN 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권고

- 유엔세계관광기구(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에서 권고
  - 회원국 159개 국
  - 한국 1975년 가입
  - 2013년 8월 총회에서<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Accessible Tourism)> 채택
- 관광정보 안내 : 예약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을 제공
  - 숙박시설 : 활동지원 없이 접근 가능한 충분한 수의 객실 확보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 보장 등

#### ■ EU의 접근 가능한 관광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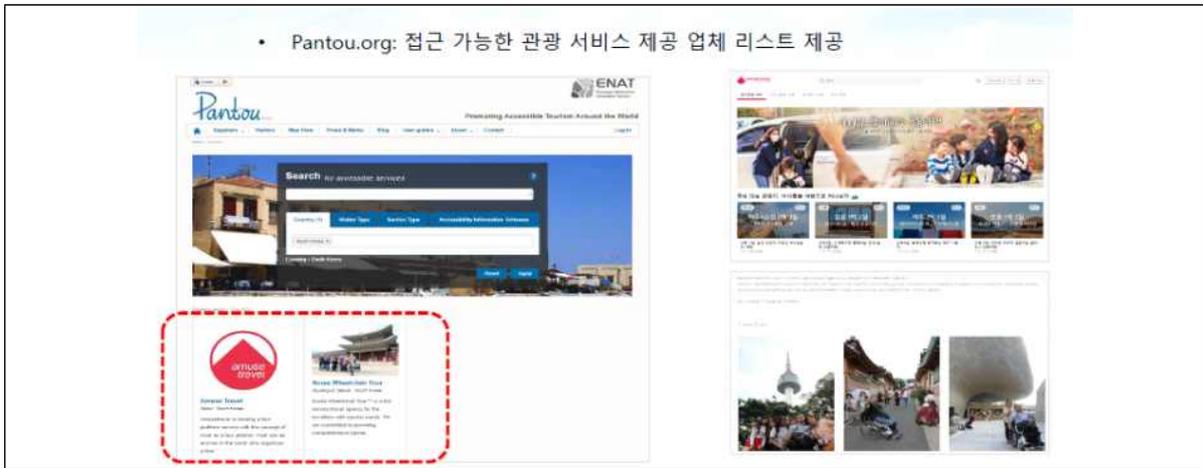
- 정책목표 :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관광에의 접근 보장
- 수행조직 : 유럽의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ENAT : European Network of

Accessible Tourism)

• 내용

- Quality Program(ENAT의 글로벌 인증 시스템(관광기업인증)) 추진
- Pantou.org 웹사이트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 서비스 제공 업체 리스트 제공
- TAD(The Ability Advisor)를 통해 접근 가능한 관광 전문가 양성 및 우수 사례 교환을 통한 협력 증진

III 그림 II-4 [Pantou.org 제공 정보]



3.2.2. 국외 국가별 사례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1990, 이하 ADA)

- ADA는 제1장 ‘고용’, 제2장 ‘공공서비스’, 제3장 ‘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제4장 ‘통신’, 제5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장 공공서비스	<p>&lt;제12132조&gt;                  장애인이 박물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등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p>
제3장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p>&lt;제12182조&gt;                  (a)“공공편의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는 사람은 공공편의시설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시설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p>

	<p>〈제12181조〉  이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에는 호텔 등의 숙박장소, 레스토랑, 극장, 쇼핑센터, 은행, 약국, 병원 등의 서비스 시설,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터미널 및 역,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학교시설 등이 포함된다.</p>
--	--

■ 영국<sup>10)</sup> .

- 영국의 1995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문화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
- 2010년에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나이, 간접적 차별 등을 방지하고자 「장애차별금지법」을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으로 대체하였으며, 현재 1995년의 장애차별금지법은 북아일랜드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 영국의 국립박물관인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은 장애인의 관람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전시물(Object Handling)과 촉각 관람(Touch Tour)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들도 전시물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1)</sup>

■ 그림 II-5 [대영박물관의 촉각 관람]



10) 강명희, 2022, 장애인의 문화재 향유권 개선을 위한 공법상 소고, 법학논집 26(4) : 62

11) 대영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britishmuseum.org/visit/accessibility-museum>)

## ■ 프랑스<sup>12)</sup>

- 프랑스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시설을 인증하는 ‘TH(Tourism & Handicaps)’ 마크를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이나 장애인 관광객이 증가하자 2001년부터 관광부는 관광협회 및 장애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관광관련시설(숙박시설, 미술관, 다중 레저시설, 레스토랑 등)에 대한 라벨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게 됨
- ‘TH(Tourism & Handicaps)’ 즉, 관광시설 인증은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에 4가지 유형의 장애인의 이용에 대해 라벨을 부여하는데 라벨은 1개에서 4개까지 수준별 시설 평가에 의해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함

## ■ 독일<sup>13)</sup>

- 베를린 관광청 산하 기관인 ‘비지트 베를린’(visitBerlin)은 ‘모두를 위한 관광’(Reisen für Alle)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함
- 베를린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 프리 도시상’을 수상한 이후, 장애인을 위한 관광에 집중하고 있으며, 2018년 베를린 ‘인터네셔널 투어 페어’에서도 ‘접근 가능한 투어리즘의 날’을 운영 하였고, 2019년 3월 10일에도 베리어 프리 관광 관련 행사를 진행함
- 주요 관광지지의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해 청각·촉각 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시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국가 인증 제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의 장애인 접근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호텔이나 관광 부문의 주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홍보하고 있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시설의 베리어 프리 서비스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액세스 베를린’(accessBerlin)과 같은 앱 지도와 경로 안내 등에 활용

-모두를 위한 관광 홈페이지에서 전국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 테스트 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음

12) 경상남도, 2020,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p.61

13) 서울연구원, 2019, 세계도시동향, “신성장동력 ‘베리어 프리’ 관광활성화 추진(독일 베를린시)  
<https://www.si.re.kr/node/61553>

-협력 기관은 장애가 있는 관광객을 새로운 고객 그룹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 일본의 유니버설 투어리즘

- 일본의 유니버설 투어리즘은 1단계로 여러 지역에 UT(Universal Tourism) 상담센터를 조성하고 이어서 2단계로 ‘Accessible Travel Japan’ 웹사이트개설하고, 3단계로 관광 배리어 프리(BF) 제도를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관광지에 대한 배리어 프리 정보 제공과 문화재에 대한 배리어 프리화가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통의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 일본의 유니버설 투어리즘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음

■ 그림 11-6 [일본 유니버설 투어리즘]



### 3.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분석

#### 3.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추진 과정

- 2017년 :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정(2017.4.10)
- 2020년 :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 사업  
유달산 조각공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 2021년 : 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 2023년 : 고하도 전망대 접근 경사로 설치 추진(기본 설계 중)
- 2023년 :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2023.10.4)

#### 3.2.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분석

- 목포시의 무장애관광 조성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임
- 목포시의 관광 정보는 관광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 관광 홈페이지

- 관광정보를 관광지별 관광정보 및 권역별 관광정보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포항 구축제 등 고유의 축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나, 관광지의 관광약자가 사 용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와 무장애관광 정보는 부족함
-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축제 및 행사 준비부터 관광약자 고려한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이 필요함

#####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 목포시 관광 앱 “목포여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권역별 로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함
-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등 접근이 가능한

음성안내 체계구축 등 앱 환경 조성이 필요함

III 그림 II-7 [목포시 관광 홈페이지 제공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관광정보를 관광지별, 권역별로 상세히 제공</li> <li>• 관광약자에 대한 정보 추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목포 항구 축제 등 목포시 고유의 축제를 상세히 안내</li> <li>• 그러나 관광약자에 대한 안내나 정보 추가 필요</li> <li>• 행사 준비부터 관광약자 고려 필요</li> </ul> 
--	---

III 그림 II-8' [목포시 스마트 앱 '비지트 목포'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관광 앱 "목포 여행" 운영</li> <li>•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권역별로 찾아볼 수 있음</li> <li>• 관광약자에 대한 정보 추가 필요</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689 1460 906 1832">  <p><b>목포근대역사관 1관</b>              4.7점 144개 리뷰              02-1274-1200              02-1274-1200</p> </div> <div data-bbox="976 1460 1193 1832">  <p><b>(주)예술촌</b>              4.7점 144개 리뷰              02-1274-1200              02-1274-1200</p> </div> </div>
---	--

